

부산광역시사하구복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3. 5. 27. ----- 사하구청장
- 나. 회 부 일 자 : 2003. 5. 27.
- 다. 상 정 일 자 : 2003. 6. 3.(제112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상정, 원안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사회복지과장 조치승)

가. 제안이유

- 2000. 10. 1 생활보호법 폐지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의 관련조문을 새로이 시행된 법 규정에 맞게 정비 및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삭제 또는 보완하여 장학기금 관리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위함.

나. 주요골자
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명칭 변경
-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정확성 및 객관성 부여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

- 본 조례 개정건은 2000. 10. 1부로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개폐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법규정에 맞게 명칭과 용어를 적의 조정하고 일부 불합리한 규제내용을 삭제 보완하여
- 장학기금 신청 참여범위를 확대, 기회를 균등히 하고 수혜의 폭을 넓혀 열린행정, 열린복지의 기본대강을 마련했다고 판단되므로 조례개정은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